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송지은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조현우 연구원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제시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9조 시도·시군구 전담조직(평균 8.8명), ②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위원회, ③ 「도시재생법」 제11조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417개소 운영 중, 2022년 12월 기준), ④ 국토교통부 지침상 시도·시군구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도시재생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상 지자체 조직을 의미
-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가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중
 - 반면 국비 지원 종료 후 구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성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필요

정책방안

-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 (주체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01.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의 의의

정부는 지역 주도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운영을 적극 지원

국비지원기간 동안 지자체의 사업 추진기반은 잘 갖추어진 반면, 지원 종료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균형발전과 도심정비를 목표로 경제거점과 특화재생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적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구조 구축이 핵심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은 사업단계에 맞추어 공공관리자, 협업자, 중간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도시재생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 주체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왔음

- 2014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 공공과 주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이 최초로 제도화
- 2018년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는 마중물 사업의 선정권한이 상당 부분 지자체에 위임되는 등 지자체의 선정·관리 권한 확대
- 2022, 2023년 신규 선정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기존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체계 구성 시 지자체의 역할 확대, 참여 주체 구성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

그림 1 도시재생정책 변화과정과 지자체 역할 확대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8, 6; 이상준 2022, 6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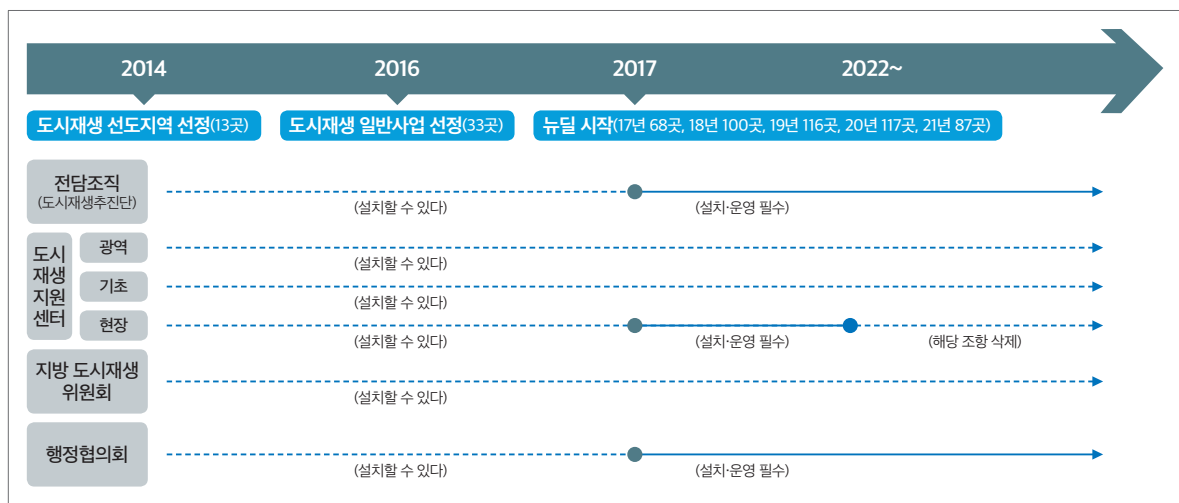
02.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법·제도 기반 마련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 달성

(중앙정부)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 시행령」에서는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이후 거버넌스 기준 강화

- (뉴딜 이전)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여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의 설립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크게 부여
- (뉴딜 이후)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사업 사전-중간평가 등을 통하여 전담조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의무화, 행정협의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 의무 등 다수의 협의체 및 위원회 운영사항 등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 증대, 역할 중복 및 조직 간 차별화 문제 발생

그림 2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설립 관련 법·제도 변화



주: 행정협의회 및 자문기구(지방도시재생위원회) 등 추진체계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 중.

자료: 국토교통부 2013; 국토교통부 202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942호, 2022. 6. 10., 일부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33호, 2022. 12. 6.,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지자체) 전국 226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례 항목 및 내용은 지자체와 상관 없이 대부분 유사한 편이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의 부서 간 시책, 사업의 연계·협조 등 일부 내용 구성상 차이는 존재
-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도시재생 기금 및 특별회계,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조례를 추가로 제·개정하는 지자체 증가

표 1 법·제도상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주요 제도

구분	주요 역할	제도 추진 현황
행정 전담조직	• 도시재생업무 총괄·조정	• 특별법·가이드라인 내 설치 의무화 명시 •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근무 지양 등 각종 가이드라인 제시 •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관련 사항은 지자체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정
행정 협의회	• 각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상시 의사결정조직	• 가이드라인 내 설치 의무화 명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도시재생 관련 심의 및 자문	• 특별법 내 설치 의무화 명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역할	• 특별법·가이드라인 내 설치 의무화 명시 • 센터 조직, 인력, 운영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자료: 관련 법·제도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03.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현황과 당면 과제

행정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자체 단위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확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

(전담조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광역·기초 지자체는 대부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재생팀'을 구성하는 사례가 가장 많음

- 지자체 조직 현황조사¹⁾에 따르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평균 인원은 8.8명이며, 담당자들은 대부분 중복업무, 겸직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인원이 도시재생사업을 담당
- 설문조사²⁾ 결과 전담조직 평균 인원은 4~6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인원이 적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인원 부족에 대해 응답

표 2 시도별 도시재생 전담조직 현황(2022년 5월 기준)

시도	지자체 수 ¹⁾	구조		담당자 수 (평균) ²⁾
		과(단)	팀, 계, 담당	
서울특별시	21	13	8	10.9
부산광역시	16	11	5	11.8
대구광역시	8	4	4	9.5
인천광역시	10	1	9	9.4
광주광역시	5	3	2	14.8
대전광역시	5	2	3	8.2
울산광역시	5	0	5	6.8
세종특별자치시	1	1	0	15.0
경기도	25	5	20	9.5
강원특별자치도	17	2	15	6.5
충청북도	11	1	10	7.6
충청남도	14	1	13	7.6
전라북도	13	2	11	7.4
전라남도	21	2	19	6.9
경상북도	22	3	19	6.2
경상남도	15	1	14	7.0
제주특별자치도	2	0	2	4.5
전체	211	52	159	8.8

주: 1)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 수.

2) 도시재생 전담부서별 평균 인원.

자료: 각 기초지자체별 홈페이지(2022년 5월 1일~5월 22일 검색) 조직도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행정협의회)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평균 연 1~2회 개최³⁾되지만, 행정협의회가 아닌 비공식적 부서 간 협의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편

- 이 외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주민공모사업 선정, 도시재생사업계획(안) 심의 등을 주로 담당하며 연 1~2회 운영이 일반적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국적으로 417개소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 중(2022년 12월 현재)이며, 이 중 국비 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291개소로 전체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

- 설문조사 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평균 인원은 5.2명이며, 광역·기초·현장 지원센터 순으로 인원이 감소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원 규모는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인원의 적절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많은 응답자가 인원이 적절하며 향후에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응답

1)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상 조직 및 인원 현황을 1차적으로 조사하였고, 해당 자료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거버넌스 체계 구성 현황자료와 비교하여 현황을 보완함.

2) 설문조사는 전국 도시재생사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3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155명이 응답함.

3) 지자체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수자료는 취합이 어려운 관계로, 지자체 조례내용 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함.

표 3 도시재생지원센터 유형별 개소수 및 평균 인원 현황(2022년 5월 기준)

(단위: 개소, 인)

운영방식	조직위계	광역시	광역시+현장	기초	기초	기초+현장	현장	합계
공공위탁		12(6.3)	-	2(10.0)	-	-	11(4.0)	25(6.2)
민간위탁		6(19.4)	-	24(9.7)	-	18(9.0)	54(4.8)	102(8.6)
행정직영		-	1(13.0)	78(4.2)	3(8.0)	57(4.3)	151(4.0)	290(4.2)
합계(평균)		18(10.4)	1(13.0)	104(5.4)	3(8.0)	75(5.1)	216(4.2)	417(5.2)

주: 괄호 안 숫자는 평균 인원을 의미함.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https://www.city.go.kr/portal/participation/supportCenter/list.do>(2022년 5월 15일 검색)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사업을 추진 중인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전담조직 이하 행정지원체계를 구성 및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

표 4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운영 현황과 과제

구분	운영 현황	의식 조사결과	과제
도시재생 전담조직	• 대부분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 설치 운영	4~6인 규모로 전담조직이 운영되며, 현재 인원은 부족하다고 인식 -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부족하다는 인식이 큰 편 - 사업단계별로 각각 1~3인의 담당자가 필요	- 특·광역시, 광역도에 따라 전담조직의 적정 인원을 고려할 필요 - 단계가 다른 복수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산정 고려 - 운영관리 단계에도 필수인력 배치 필요 - 설치 의무화에 따른 추진체계 경직 -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전담조직의 역할 미비
행정 협의회	- 계획 수립, 변경 등과 관련하여 연 1~2회 정기 운영 - 비공식적인 협의 등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편	행정협의회 운영규모 등이 적절하며 향후에도 유지 예정이라는 의견이 다수	- 행정협의회를 유지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방식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제도 완화 필요 -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구성되어 형식적 운영문제 제기
도시재생 위원회	• 계획 수립, 변경 등과 관련하여 연 1~2회 정기 운영	-	•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 중복 의견
도시재생 지원센터	• 대부분 광역·기초 지자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단계별로 1~3인 규모의 인원이 필요하며, 향후에도 조직 유지 예정으로 응답	- 현장지원센터 사업 종료 후 기초지원센터 및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의 업무 이관 등에 관한 고려 -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 간 역할 모호 - 기구성된 유사 지원조직 간 연계·활용 미비

자료: 관련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설립되어 운영관리 주체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85곳이 인가를 받아 운영 중

-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과 지속가능한 운영 한계 등 어려움 직면
- 국비 지원 종료 후,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협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담당자의 업무 연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적 운영 지원이 필요

표 5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개소 수(2022년 2월 기준)

(단위: 개소)

사업선정 연도	설립인가 연도	2019	2020	2021	합계
	2016	-	4	4	8
	2017	3	9	14	26
	2018	-	10	19	29
	2019	-	4	10	14
	2020	-	1	7	8
	합계	3	28	54	85

자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https://www.city.go.kr/portal/business/vilmgrcoop/center/list.do>(2022년 5월 15일 검색)을 바탕으로 인가 현황에 대한 추가조사 후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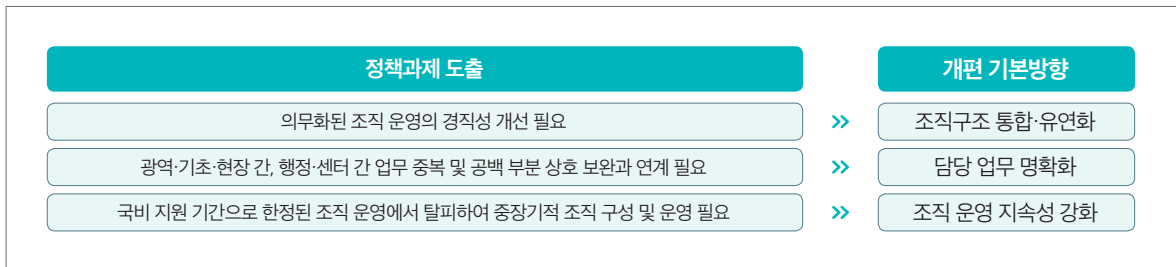
04.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기본방향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편 틀 마련

- 기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의 개편방향을 설정할 필요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① 조직구조 통합·유연화, ② 담당업무 명확화, ③ 조직 지속성 강화를 설정하고 주요 행정지원체계의 주체별 개선방안 제안

그림 3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재구축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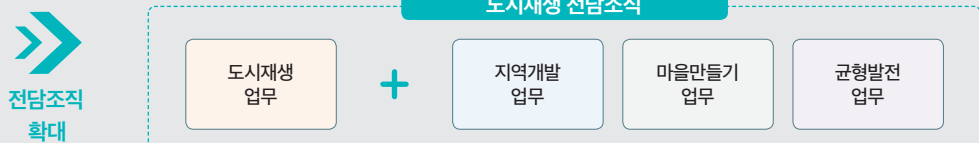
정책 개선방안은 크게 주체별 역할 재정립방안,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

(주체별 역할 재정립방안)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로 구분하여 각 주체별 역할 지원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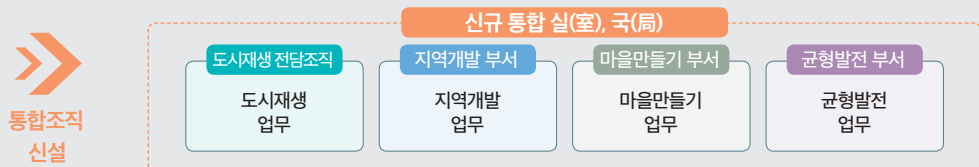
- (전담조직) 기초지자체 전담조직을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통합·유연화 방식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 광역지자체 전담조직의 사업 및 인력 관리 역할 강화 필요

[전담조직 통합·유연화 예시]

[예시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마을만들기, 균형발전 관련 업무들을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운영하는 방식



[예시 ②] 현행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개발, 마을만들기, 균형발전 등과 통합된 부서에 포함된 신규 통합 실, 국 등에 포함된 부서로 운영하는 방식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 예시: 전문직공무원]

[제도 현황] 2016년 9월 21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혁신기획과는 2017년부터 공직 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국제통상, 재난·안전 등)에 근무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

전문분야 선정기준 예시

- 국제 협상 능력 및 국제 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국제통상
-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재난·안전, 질병관리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분야: 인사·조직
-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세제, 환경보전

[예시 ①] (익산시 주민등록 전문관 운용사례) 익산시는 다양화된 주민등록 관련 민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문관을

임명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명된 전문관에 의해 주민등록 민원 처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 시스템 마련

[예시 ②] (문화재청 문화유산 돌봄 전문관 운용사례)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한 관련 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문화유산 돌봄 전문관 위촉 제도를 추진, 특히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사업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등의 진취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제도 운영

[예시 ③] (김해시 공무원 전문관 제도 확대 추진사례) 김해시는 2021년 기준, 4개의 부서에서 실시하던 공무원 전문직위제를 2022년 기준 총 20개 부서로 확대하여 제도 운용, 기존 운용하던 경전철 재무구조화, 민사 소송 대처, 농산어촌 개발 등 4개 부서의 운영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홍보(유투브) 담당, 도시재생사업, 수도 분야 등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자료: 인사혁신처 2016, 2; 전북도민일보 2022; 국제신문 2021; 문화재청 2023.

- **(행정협의회)** 현행과 같이 운영하되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유연화하여 공식·비공식적 협의체계 유지
-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의 전문성·지속성 제고 및 유관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유연성 강화
 - * 사례 1. 수원도시재단: 총체적 접근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을자치, 주거복지, 청년지원, 상권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센터들이 통합된 재단을 조직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민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체 운영
 - * 사례 2.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지역활성화 및 공동체활동 지원이라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내 중간지원조직들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 마련
- **(도시재생지원기구)**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 지원 역할 강화,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광역지원센터의 중장기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팀(운영인력) 구성 및 운영, 거점시설 운영관리 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대안 주체 모색,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 마련

-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팀(운영인력)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전담조직에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팀(운영인력)을 마련하고 사후 운영관리 담당 및 지원 주체에 대한 계획을 마련
- 거점시설 운영관리 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대안 주체 모색: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 주체 중 대표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수익 모델 확보,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외의 적절한 운영관리 주체의 선정과 위탁을 위한 대안 마련, 지역 내 타 주체와의 협업 강화
-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 마련: 지자체는 도시재생 계획단계부터 주민 조직화와 거점시설 조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통합 로드맵 마련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가이드라인상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권고, 광역형 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추진, 사후관리·운영관리 조례 제·개정방안 제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개선)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향에 따른 개선

-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 유연화)**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자율 재량 확대
- **(국비 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권고)**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국비 지원 종료 이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비 편성 권고 내용을 명시

(도시재생 관련 평가제도 개선) 도시재생사업의 각 평가단계에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와 관련된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사항을 평가체계에 반영

- (선정 평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나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강제적인 조직 구성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점 검토사항'을 삭제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수정
-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100%에서 일정 부분 축소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른 최적화된 조직 구성 부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 추가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전담조직 운영실적 및 활동 횟수 등을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외에도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업무지속성 및 전문성 강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종합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항목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포함 필요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위한 지원)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개정 지원

- (광역형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추진) 도시재생사업의 수요가 큰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광역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추진을 위한 별도의 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여 추진
- (사후관리조례·운영관리조례 제·개정방안) 지자체 차원에서 사후관리조례, 운영관리조례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제주도 사후관리조례, 전주시 거점시설운영관리조례 등 선진적 조례 제·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자체의 여건에 적합한 조례 마련

참고문헌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21.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과제.
광역·기초지자체 홈페이지. 2022년 5월 1일~5월 22일 검색.
국제신문. 2021. 김해시 공무원 전문관 제도 확대...20개 부서 7급 대상, 11월 30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1130.99099009383> (2024년 1월 31일 검색).
국토교통부. 201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17501 (2024년 1월 31일 검색).
_____. 2022. '22년도 도시재생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게시. <https://www.city.go.kr/mobile/notice/notice/noticeList/view.do;jsessionid=1BE1F2944FB C898DC330FEA82D1954BA?nttid=8425> (2024년 1월 31일 검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2018.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https://www.city.go.kr/data/pdf/Newdeal_roadmap.pdf (2024년 1월 31일 검색).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 (2022년 5월 15일 검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942호, 2022. 6. 10., 일부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33호, 2022. 12. 6., 일부개정).
문화재청. 2023. 문화재청, 문화유산 돌봄 전문관 8명 위촉 활용, 3월 13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932> (2024년 1월 31일 검색).
이상준. 2022. 인천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인천도시재생포럼. 10월 7일. 인천: 인하대학교.
이왕건, 박정은, 임상연, 서미호, 박소영, 이승욱, 최명식, 권규상. 2020. 도시재생 비틀어 보기. 창조적 도시재생시리즈 100. 세종: 국토연구원.
인사혁신처. 2017. 전문직공무원 제도 첫 실시, 5월 2일. 보도자료. https://www.mpm.go.kr/innovation2016/NewsPolicy/Newspolicy/index.jsp?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2376&category=&pagelidx=142 (2024년 1월 31일 검색).
임상연, 이진희, 최정윤, 정은진, 박정윤, 박정호, 이승민. 2020.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전북도민일보. 2022. 익산시 주민등록 전문관, 50가지 사례별 주민등록 교육, 8월 2일.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234> (2024년 1월 31일 검색).

※ 이 브리프는 "임상연, 이진희, 송지은, 박효숙, 조현우, 박민숙. 2022.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임상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sylim@krihs.re.kr, 044-960-0230)
- **이진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jhlee@krihs.re.kr, 044-960-0637)
- **송지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jesong@krihs.re.kr, 044-960-0674)
- **박효숙**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전문연구원(hspark@krihs.re.kr, 044-960-0223)
- **조현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Johyunwoo1@krihs.re.kr, 044-960-0305)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홈페이지 www.krihs.re.kr

